



Tax Alert

Grant Thornton Vietnam

2020년 3월



“2019년도 확정신고” 최신 업데이트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2019년도 확정신고 및 SARS-CoV-2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전염병 기간동안의 기업지원 관련 중요한 지침을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합니다. COVID-19는 2019년 12월말에 시작되어 전세계 여러 국가로 확산되며 세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COVID-19 전염병에 대한 위험도를 Epidemic 단계에서 Pandemic 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저희 **Grant Thornton Vietnam(GTV)**은 베트남에서 이 기간동안에 적용되는 (조건부) 납세기한 연장, 연체이자 면제 등에 관한 절차 및 정책에 대한 최신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COVID-19이 초래한 복잡한 상황은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베트남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A. 확정신고기한

Point dd, Clause 3, Article 10, Circular 156/2013/TT-BTC 에 따르면, “세금확정신고서류 제출기한은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많은 납세자들이 이번 사태에 따른 세금확정신고기한 연장 및 감세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에 대한 변경은 없을 것으로 재무부는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정신고와는 별도로 납세기한에 대해서는 일부 연장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는 아래의 “C. 납세기한 연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시 손금인정비용

COVID-19 와 관련 손실(손상)에 대한 비용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 손실(손상) 금액에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만큼을 비용으로 손금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법인세 과세소득(Taxable Income)계산 시 손금인정비용을 결정하기 위 해서는 Section 2.1, Clause 2, Article 4, Circular 96/2015/TT-BTC 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손실(손상)을 입은 제품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단, 손실(손상)의 사유, 피해 종류, 피해 수량 및 회사의 법적 대리인이 공증한 손상된 제품에 대한 기록 제출 요.
-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상 금액 (if any)
- 개인 혹은 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자료 (if any)

세무 당국에서 상기의 서류들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C. 납세기한연장

COVID-19는 베트남에서 현재 까지 많은 기업과 납세자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기업들 및 납세자들의 납세의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즉각적이고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2020년 3월 4일, Nguyen Xuan Phuc 총리는 명령(Chi thi) No.11/CT-TTg에 서명함으로써, COVID-19로 인해 발생한 경영활동에서 겪는 어려움 및 사회보장 체제유지에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발동하였습니다.

이번 조치 중 가장 주목 할 점은 총리가 직접 중앙은행에게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할 때 250조 VND에 이르는 신용지원 패키지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재무부에는 30조VND에 이르는 자금을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2020년 3월 중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 3월 11일 재무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초안을 공표하였습니다.

대 상

- i. 다음과 같은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식품 생산 및 가공; 직조; 의류 생산; 신발 생산; 고무 제품 생산; 전자 제품, 컴퓨터 생산; 자동차 제조 및 조립 (09 석 이하의 자동차 제조 및 조립 제외); 철도 운송; 육상 운송; 수상 운송; 항공 운송; 운송을 위한 창고 및 지원 활동; 숙박 서비스, 케이터링 서비스; 여행사 및 그의 지원 서비스 활동;
- ii. 위의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 가족기업 및 개인 사업자

- iii. 위의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법에 따라 정의된 소기업 및 영세기업

납세연장 가능기한

재무부는 상기에 언급된 대상 (i) 및 (iii) 에 대해, 2020년 3, 4, 5, 6월 혹은 2020년 1분기 및 2분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5개월 뒤로 이연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재무부는 상기에 언급된 대상 (ii)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의 납부를 2020년 12월 15일로 이월시키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납세자는 현행규정과 동일하게 회계기간 말 기준 90일 이내에 세금 확정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상기 변동 사항은 납세 시에만 적용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대상 (i) 및 (ii) 이 주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COVID-19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무부는 해당 토지임대료 납부 마감 시한을 5개월뒤로 이연하지만, 늦어도 2020년 10월 31일 이전에는 모든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납세기한연장 신청절차

금번 시행령과 함께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연장 요청 양식 (Giấy đề nghị gia hạn nộp thuế, tiền thuê đất ("GDN"))" 이 함께 발행됩니다. 회사 담당자 및 납세자들은 2020년 5월 31일까지 해당 양식을 작성하시어 직접 과세 당국으로 제출하셔야 하며, 2020년 5월 31일 이후에 도착하는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간의 이연납세액에 대한 이자는 면제됩니다.

www.mof.gov.vn에 시행령 초안이 공개의견수렴을 위해 공표되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시행령을 확인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다면 코멘트를 달아 주 시 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시행령 초안이 아직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세청은 2020년 3월 3일자로 공문 897/TCT-QLN를 발행하여 납세기한연장 및 연체료 면제 지침을 공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방 과세당국에게 다음과 같은 현행 규정대로 납세 이연 및 연체료 면제 절차를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이 공식적으로 공표되면, 아래 현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세금 및 토지임대료 납부 연장 요청 양식(Giấy đề nghị gia hạn nộp thuế, tiền thuê đất ("GDN"))"만 작성 및 제출하시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아직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추후 공표되는 최종 내용을 꼭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현행 규정 >

이연납부 가능한 납세액 한도, 납세 기한 및 연체료 면제 규정

Clause 2, Article 31, Circular 156/2013/TT-BTC 에 따라, 세금 이연납부 금액이 손실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연납부는 마감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기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rticle 35, Circular 156/2013/TT-BTC 및 Point c, Clause Article 2, Circular 26/2015/TT-BTC에 따라 전염병 발생시 연체료 면



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체료는 전염병 발생 시점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및 면제되어지며, 이 경우 면제 금액은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연납부의 적용범위 및 연체료 이자면제 규정

회사 담당자 및 납세자는 관할 세무당국에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납세 이연 신청 및 연체이자 면제 신청서(납세자직접 작성) (Văn bản đề nghị gia hạn nộp thuế hoặc văn bản đề nghị miễn tiền chậm nộp)
- 지연납부액 산정을 위한 제품 손실(손상)액 평가 자료 (납세자 작성 혹은 납세자의 법률 대리인 작성)
- 연체료 면제액 산정을 위한 재무부에 의해 설치된 평가 위원회 혹은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가기관 등이 발간한 손해 평가 보고서

- 전염병으로 부터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음을 증명하는 경찰서, 인민위원회, 산업구역 관리 위원회, EPZ (Export-processing zone) 및 EZ(Economic Zone) 관리공단으로 부터 받은 증명서.
-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보상금액 (if any)

D. 2020년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스케줄

명령No.11/CT-TTg를 통해, 총리는 각 부처, 부서 및 기관에 기업 및 납세자들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부담 및 관련 발생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긴급검토를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지시 사항 이행을 위하여,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재무부는 국세청 및 관세청에 2020년 정기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

였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검토사항이 기업 및 납세자가 악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조사 일정을 조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2020년 1분기에 예정된 조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2분기 혹은 3분기 중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의무 위반이 높은 기업을 조사하는 데에만 집중하기로 하였으며, 위반 징후가 없는 경우 조사를 수행하지 않도록 공식 서한을 발행하였습니다.

이전가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공지



A. 이전가격 문서화 작업

법인 납세자는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법인세 확정신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회계연도 말인 법인 납세자의 경우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서류와 함께 이전가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가격 신고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어 원문도 함께 기입하오니, 업무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고서 01 (Thông tin về quan hệ liên kết và giao dịch liên kết – Mẫu 01): 특관자거래 기본정보
- 신고서 02 (Thông tin về Hồ sơ quốc gia – Mẫu 02): 개별기업보고서 관련정보
- 신고서 03 (Thông tin về Hồ sơ toàn cầu – Mẫu 03): 통합기업보고서 관련정보
- 신고서 04 (Báo cáo lợi nhuận liên quốc gia của Công ty mẹ tổ chức-Mẫu04): 국가별보고서

또한, 납세자는 이러한 신고서 양식 이외에도 아래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과세 당국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Master File (마스터파일, 통기업보고서) : 그룹본사에서성,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등 기술
- Local File (로컬파일, 개별기업보고서) : 각 자회사에서 작성, 그룹정책을 잘 준수하였는지 기술
- Country-by-Country (CbC, 국가별보고서)

법에 의해 요구되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이 가격이나 이익을 이전하도록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납부 할 세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조사결과는 세무 당국의 조정 후에도 미납 세금에 대해서는 행정적 처벌 및 연체료 부과 처벌을 받습니다.

COVID-19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수익성도 크게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손실로 인하여, 베트남에서 이전가격 조사를 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수익성과 손실이 낮은 상황을 분석하고 그 이유를 Local File(로컬 파일)에 기록해야 합니다.

B. 금융거래에 관련한 OECD 공지사항

2020년 2월 11일, OECD는 여러 다양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이전가격 이슈에 관련하여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조치 4 및 조치 8~10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서 OECD는 회사간 대출, 자금통합(cash pooling), 헷징(Hedging),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ees) 및 자가보험제(captive insurance)의 정상가격과 거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2018년 7월에 발행된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이전가격에 대한 보고서"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 보고서는 다양한 금융 거래 시 이전가격 적용의 일관성에 기여하고 이전가격 분쟁 및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 최초로 다루었다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Contact

회계, 세무, 이전가격, 투자법, 관세법, 노동법 및 기타 경영활동에서 발생된 이슈사항에 대한 자문이 추가로 필요하신 경우, 저희 Grant Thornton의 전문가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뉴스레터의 다운로드가 필요하신 경우, <https://www.grantthornton.com.vn/> 에서 다운받아주시기 바랍니다.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84 24 3850 1686
F+ 84 24 3850 1688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Kaoru Okata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4 3850 1680
E kaoru.okata@vn.gt.com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김민제 (Kim Minje)

Manager – Korean Desk
D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84 28 3910 9100
F+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grantthornton.com.vn](https://www.grantthornton.com.vn)

©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